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15

2021. 04. 26.
기획경제위원회

Ⅰ.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04월 02일, 이병도 의원 외 27명

나. 회부일자 : 2020년 04월 06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21.04.26.)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이병도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인증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유망 중소기업의 인증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유망 중소기업 인증 대상과 재인증 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유망 중소기업의 인증 절차와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유망 중소기업의 인증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안 제9조)

마. 유망 중소기업 인증 유효기간을 정함(안 제10조)

바. 유망 중소기업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제정안의 개요

○ 제정안은 성장 잠재력이 크고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해 지역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유망 중소기업 인증제’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되었음.

나. 인증사업 현황

○ 서울시는 서울산업진흥원을 지원기관으로 선정해 기술력과 기업우수성, 시장성과 성장성, 재무건전성 등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을 “하이 서울기업”으로 인증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2002년 ‘HI-Seoul’ 도시브랜드 개발에 따른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사업으로 시작한 “하이서울기업”은 2020년부터 유망 중소기업 인증 사업으로 개편하여 운영 중임.

< 연도별 하이서울기업 인증업체 규모 >

(단위 : 개사)

연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인증 업체	11	30	38	45	60	74	90	120	150	170	200	204	196	713	902	1014	933	983

○ 인증기업에게는 ▸기업 마케팅과 프로모션, ▸글로벌 시장 진출, ▸B2B 비즈니스서비스, ▸정부사업 유치, ▸인증기업간 네트워킹, ▸하이서울 버추얼클러스터[1]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 그러나, “하이서울기업 인증”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공인된 인증제도로 발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제정안은 업종, 기업형태, 성장단계 등 중소기업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유망 중소기업 인증·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

(1) 정의(안 제2조)

○ 제정안은 “중소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1) 하이서울기업 위치, 업종, 수출국가 등의 DB정보를 제공하고 외부기업/기관의 유입 매개체가 되도록 하여 하이서울기업의 신규 비즈니스 기회와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중소기업”으로 “유망 중소기업”을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생산성이 양호하고, 기술·품질 수준이 우수한 중소기업 중 서울시장이 인증한 기업”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음.

○ 이는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등의 의미와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이 조례를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있어 논란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임.

⑵ 인증 대상(안 제3조)

○ 안 제3조는 유망 중소기업의 인증을 “최초인증”과 “재인증”으로 구분하고 “최초인증 대상”은 선정계획 공고일 현재 성장 잠재력이 높고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조 또는 제공 중인 관내 중소기업으로 하고, “재인증 대상”은 인증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예정인 관내 유망 중소기업으로 규정하였음.

○ 이는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하이서울기업 인증사업”과 인증대상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이미 인증 받은 우수 중소기업과 조례 제정에 따라 새롭게 인증 받는 기업들 간의 혼란을 방지하고 인증제도의 공신력을 유지하기 위함임.

○ 다만, “성장 잠재력이 높고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조 또는 제공하는 중소기업”의 기준이 다소 모호하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시행규칙이나 지침으로 세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보완해야 할 것임.

⑶ 유망 중소기업 인증절차 등(안 제5조)

○ 안 제5조는 공정한 인증 절차와 평가를 거쳐 유망 중소기업을 인증하고,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하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서울산업진흥원이나 관련 단체, 기관에 인증과 평가 절차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공정한 인증 절차와 평가, 인증표시는 인증제도의 가치와 긍지를 유지하는 필수 요건이며,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서울산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원 등)에 위탁함으로써 인증과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하이서울기업 인증사업”은 2013년부터 서울산업진흥원의 고유사무로 시행되어 지원기관(서울산업진흥원)과 운영기관(하이서울기업협회)의 역할이 정립되고 있으므로, 인증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공모방식의 민간위탁보다는 서울산업진흥원에 대행하거나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다양화해야 할 것임.

< 수정의견 >

제정안	수정의견
제5조(유망 중소기업 인증절차 등) ① 시장은 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공정한 절차 및 평가를 거쳐 유망 중소기업을 인증하여야 한다. ② 인증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인증을 받은 기업은 시장이 정하	제5조(유망 중소기업 인증절차 등) ① 시장은 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공정한 절차 및 평가를 거쳐 유망 중소기업을 인증하여야 한다. ② 인증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인증을 받은 기업은 시장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서울산업진흥원 또는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서울산업진흥원 또는 단체, 기관 등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⑷ 유망 중소기업 인증 심의위원회(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

○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인증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유망 중소기업 인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제6조)과 ▸간사(제7조), ▸의견청취(제8조), ▸수당(제9조)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유망 중소기업 인증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

◦ 기능
- 유망 중소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 심의
- 인증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방안 심의
-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 대한 의견 청취

◦ 구성(총 9명 이내)
- 당연직 : 경제일자리기획관,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 위촉직 : 시의원, 기업인·언론인·교수 등
- 간사(위원 정수에 불포함) : 관련 업무 담당 과장

◦ 임기 : 2년(1회 연임가능)

○ 제정안이 유망 중소기업 인증제도에 대한 기본 조례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된 인증제도를 실행하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위원의 정수가 9명에 불과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인증과 지원방안에 대한 심의가 어려우므로 위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인증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인증제도와 지원정책 등의 정책적 사안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정책위원회’와 인증 대상의 선정과 심의를 다루는 ‘실무위원회’를 각각 구분하여 운영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 수정의견 >

제정안	수정의견
제6조(유망 중소기업 인증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유망 중소기업 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유망 중소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 2. 인증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방안 <신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 ⑤ (생략) <신 설>	제6조(유망 중소기업 인증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유망 중소기업 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유망 중소기업 인증 정책에 관한 사항 2. 인증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증 대상의 선정과 인증,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 ⑤ (제장안과 같음) ⑥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유망 중소기업 인증 대상 선정과 인증 심의를 위하여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⑸ 인증의 유효기간(안 제10조)

○ 안 제10조는 유망 중소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인증기간 만료 이전 또는 이후에 해당 기업이 재인증을 요청하는 경우, 평가를 통해 재인증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인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해당기업이 재인증을 요청할 경우 평가를 통해 재인증을 허용하는 것은 인증제도의 유연성과 절차적 간소화를 도모하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유망 중소기업 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고, 신규인증 기업과 절차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는 신규인증을 받도록 수정해야 할 것임[2].

< 수정의견 >

제정안	수정의견
제10조(인증의 유효기간) 제5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인증기간 만료 이전 또는 이후 해당 기업이 재인증을 요청하는 경우 평가를 통해 재인증할 수 있다.	제10조(인증의 유효기간) 제5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인증기간 만료 이전에 해당 기업이 재인증을 요청하는 경우 평가를 통해 재인증할 수 있다.

⑹ 유망 중소기업 인증기업 지원(안 제11조)

○ 안 제11조는 인증된 유망 중소기업에게 ▸인증서와 현판 교부, ▸홍보,

2) “하이서울기업 인증사업”에서도 인증기간 만료 후에는 신규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

▸중소기업육성자금, ▸해외 마케팅, ▸기술개발, ▸역량강화와 브랜드화, ▸인증기업 간 상생협력 사업 등을 우대·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러한 지원책은 유망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들에게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제시하고 제공함으로써 인증기업들의 경영 안정과 사업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인증기업의 조달 참여시 가점 부여, R&D 사업 우대, 세제감면, 세무조사 유예, 특허 연차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경기도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금융우대 등 서울시 인증 사업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주요 중소기업 인증제도 비교 >

구분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서울산업진흥원
주요 인증제도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하이서울기업
주요혜택	◦ 세제혜택 ·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감면(50~75%) · 정기세무조사/관세조사 유예 등 ◦ 금융우대 · 기보 보증한도 확대 및 보증료율 감면 · 신보 매출채권 보험료 할인 ·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 우대 및 보증료율 할인 ◦ 기술/판로 지원 · 중기벤처부, 특허청 등 지원사업 가점 · 특허 연차등록료 감면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우대 등	◦ 기업프로모션 · 인증서 및 현판 교부 ◦ 금융우대 · 신용보증재단 평가 가점 및 금리 우대 ◦ 기술/판로 지원 · 경기도, GBSA, 테크노파크 등 21개 사업 가점 · 경기무역협회 무역기금 융자 가점	◦ 기업프로모션 · 인증서 및 현판 교부(시장명의) ◦ 기술/판로 지원 ·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우대 · 시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우대 · 시 기술개발 지원사업 우대

○ 따라서 인증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고 차별화된 지원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정책펀드 조성과 특화 R&D 지원,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 한도 확대와 보증료율 감면, ▸지방세 감면[3] 등의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⑺ 인증의 취소(안 제12조)

○ 안 제12조는 인증기업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지정 후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거나 합병된 기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폐업, 부도, 영업 중단 등의 경우, ▸본사, 주사무소 및 사업장을 관외로 이전한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인증제도의 공신력과 명예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증취소의 사유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으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유망 중소기업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의미가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적용이 요구됨.

○ 한편,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자격 박탈 등의 처분행위를 할 경우에는 처분 대상자에게 사전통지하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청문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개정안에 이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3) 다만, 지방세의 감면을 위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함.

< 수정의견 >

제정안	수정의견
제12조(인증의 취소)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 5. (생략) <신 설>	제12조(인증의 취소)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 5. (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유망 중소기업의 인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중소기업에게 사전통보 하고, 사전통보 후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⑻ 지도・점검 등(안 제13조)

○ 안 제13조는 유망 중소기업 인증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 대해 자료제출과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에게 부여하고 있음.

○ 민간기업에 대한 서울시의 지도・점검은 지나친 경영간섭으로 보일 우려가 있으므로 서울시 지원 사항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한편, 제정안에는 서울산업진흥원으로부터 유망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하이서울기업”에 대한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부칙에 추가하여 인증제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수정의견 >

제정안	수정의견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제2조(하이서울기업 인증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서울산업진흥원으로부터 “하이서울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유망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것으로 본다.

라. 종합의견

○ 제정안은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인 유망 중소기업 인증·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정책적 의의가 있음.

○ 또한, 기존 “하이서울기업 인증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수 있는 기반이 되는 바, 향후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제시하여 법·제도 도입에 따른 정책적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음.

○ 다만, 서울산업진흥원에 대한 대행 근거 마련, 정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역할 분리, 재인증 요건 강화, 인증취소 절차 등을 보완함으로써 입법완결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한편, 「중소기업기본법」[4]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토록 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의 유망 중소기업 인증과 지원사업이 충분한 입법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것임.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수정안요지

가. 수정이유

○ 재인증 제도의 남용 방지를 위해 재인증 대상과 유효기간을 개선하고, 인증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대행 방식을 추가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정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분리하고, 인증 취소 절차를 강화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며, “하이 서울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대한 경과규정을 신설함.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재인증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재인증 대상을 선정대상 연도에 만료

---

4)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5(협의 및 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수혜자 선정 등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심의회가 이를 조정한다.
③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변경 협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정이거나 만료 이후 30일 이내인 중소기업으로 함(안 제3조, 안 제10조).

○ 인증의 종류를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인증 관련 업무를 서울산업진흥원이나 단체, 기관 등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유망 중소기업 인증 심의위원회를 정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로 구분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유망 중소기업의 인증을 취소할 때, 해당 기업에 사전통보와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

○ 조례 시행 이전에 “하이서울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을 이 조례에 따른 유망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신설함(안 부칙 제2조).

Ⅵ.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10명, 전원찬성)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련 2315

제안년월일 : 2021년 04월 26일
제 안 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재인증 제도의 남용 방지를 위해 재인증 대상과 유효기간을 개선하고, 인증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대행 방식을 추가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정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분리하고, 인증 취소 절차를 강화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며, “하이 서울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대한 경과규정을 신설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재인증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재인증 대상을 선정대상 연도에 만료예정이거나 만료 이후 30일 이내인 중소기업으로 함(안 제3조, 안 제10조).

○ 인증의 종류를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인증 관련 업무를 서울산업진흥원이나 단체, 기관 등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유망 중소기업 인증 심의위원회를 정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로 구분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유망 중소기업의 인증을 취소할 때, 해당 기업에 사전통보와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

○ 조례 시행 이전에 “하이서울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을 이 조례에 따른 유망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신설함(안 부칙 제2조).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중 “이미 완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인”을 “만료예정이거나 만료 이후 30일 이내인”으로 한다.

안 제5조제2항 중 “평가기준”을 “종류, 평가기준”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하고, “위탁할 수 있다.”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로 각각 한다.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유망 중소기업 인증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유망 중소기업 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유망 중소기업 인증 정책에 관한 사항
2. 인증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증 대상의 선정과 인증,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당연직 위원 : 시 경제일자리기획관,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2. 위촉직 위원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및 기업인·언론인·교수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유망 중소기업 인증 대상 선정과 인증 심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안 제10조 단서 중 “이전 또는 이후”를 “이전 또는 이후 30일 이내에”로, “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한다.

안 제12조를 각 호를 포함한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유망 중소기업의 인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중소기업에게 사전통보하고, 사전통보 후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이서울기업 인증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서울산업진흥원으로부터 “하이서울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유망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것으로 본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3조(인증 대상) 유망 중소기업의 최초인증 대상은 선정계획 공고일 현재 성장 잠재력이 높고 우수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조 또는 제공 중인 시 관내 중소기업으로 한다. 다만, 재인증 대상은 선정대상 연도에 인증 기간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만료예정인 유망 중소기업 중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시 관내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3조(인증 대상) 유망 중소기업의 최초인증 대상은 선정계획 공고일 현재 성장 잠재력이 높고 우수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조 또는 제공 중인 시 관내 중소기업으로 한다. 다만, 재인증 대상은 선정대상 연도에 인증 기간이 만료예정이거나 만료 이후 30일 이내인 유망 중소기업 중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시 관내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5조(유망 중소기업 인증절차 등) ① 시장은 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공정한 절차 및 평가를 거쳐 유망 중소기업을 인증하여야 한다. ② 인증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인증을 받은 기업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서울산업진흥원 또는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유망 중소기업 인증절차 등) ① 시장은 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공정한 절차 및 평가를 거쳐 유망 중소기업을 인증하여야 한다. ② 인증의 종류,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인증을 받은 기업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업무를 서울산업진흥원 또는 단체, 기관 등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유망 중소기업 인증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유망 중소기업 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유망 중소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 2. 인증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방안 <신 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유망 중소기업 인증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유망 중소기업 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유망 중소기업 인증 정책에 관한 사항 2. 인증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증 대상의 선정과 인증,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② ~ ⑤ (생략) <신 설>	② ~ ⑤ (제정안과 같음) ⑥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유망 중소기업 인증 대상 선정과 인증 심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인증의 유효기간) 제5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인증기간 만료 이전 또는 이후 해당 기업이 재인증을 요청하는 경우 평가를 통해 재인증 할 수 있다.	제10조(인증의 유효기간) 제5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인증기간 만료 이전 또는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기업이 재인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통해 재인증 할 수 있다.
제12조(인증의 취소)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 5. (생략) <신 설>	제12조(인증의 취소)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 5. (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유망 중소기업의 인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중소기업에게 사전통보 하고, 사전통보 후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이서울기업 인증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서울산업진흥원으로부터 “하이서울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유망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인증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의 인증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관내 기업”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의3호에 따라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시의 관할 구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이하 “ 유망 중소기업” 이라 한다)이란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생산성이 양호하고, 기술·품질 수준이 우수한 중소기업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인증 대상) 유망 중소기업의 최초인증 대상은 선정계획 공고일 현재 성장 잠재력이 높고 우수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조 또는 제공 중인 시 관내 중소기업으로 한다. 다만, 재인증 대상은 선정대상 연도에 인증 기간이 만료 예정이거나 만료 이후 30일 이내인 유망 중소기업 중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시 관내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유망 중소기업을 매년 발굴하여 인증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망 중소기업이 지역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유망 중소기업 인증절차 등) ① 시장은 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공정한 절차 및 평가를 거쳐 유망 중소기업을 인증하여야 한다.

② 인증의 종류,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인증을 받은 기업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업무를 서울산업진흥원 또는 단체, 기관 등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유망 중소기업 인증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유망 중소기업 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유망 중소기업 인증 정책에 관한 사항
2. 인증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증 대상의 선정과 인증,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당연직 위원 : 시 경제일자리기획관,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2. 위촉직 위원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및 기업인·언론인·교수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유망 중소기업 인증 대상 선정과 인증 심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유망 중소기업 인증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인증의 유효기간) 제5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인증기간 만료 이전 또는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기업이 재인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통해 재인증할 수 있다.

제11조(유망 중소기업 인증기업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유망 중소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서 및 현판 교부
2. 인증기업 홍보
3.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 우대
4. 시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 우대
5. 시 기술개발 지원 사업 우대
6.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역량강화 및 브랜드화 지원
7. 인증기업 간 상생협력 사업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인증의 취소)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유망 중소기업 지정 후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거나 합병된 기업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유망 중소기업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폐업, 부도, 영업 중단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5. 시 소재 본사, 주사무소 및 사업장을 관외로 이전한 경우

② 시장은 유망 중소기업의 인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중소기업에게 사전

통보 하고, 사전통보 후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제13조(지도·점검 등) 시장은 제 11조에 따른 지원사항에 대하여 해당 중소기업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지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이서울기업 인증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서울산업진흥원으로부터 “하이서울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유망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것으로 본다.